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03,335,643	18,100,069
일반회계	542,287,523	16,268,626
특별회계	61,048,120	1,831,444
기타특별회계	61,048,120	1,831,44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16,276,769	488,303
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	32,476,179	974,285
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485,184	14,556
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	239,605	7,188
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6,023,725	180,712
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	5,546,658	166,400

제 2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와 같다.

제 3 조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'명시이월사업조서'와 같다.

제 6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4,250,12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6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.